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지금 말씀하신 第3條…….

○金成奐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白昌鉉 네.

○金成奐委員 제가 發言하겠습니다. 金成奐委員입니다. 效率적인 進行을 위해서 修正改正案이 그러한 條項이 있으면 우리가 論議를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原案대로 通過하는 것을 청합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지금 말씀하신 第3條 第2項 말미에 「또는 施設改良」 部分을 追加로 挿入하여 修正하자고 提議한 內容을 撤回하였고 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 案件에 第1條에서 第8條까지 油印物에 나와 있는 대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그럼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案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金의 助成) 基金은 다음 각호의 財源으로 助成한다.

1.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出捐金
2.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수익금
3. 國家 및 銀行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의 借入金 및 出捐金

第3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使用한다.

1. 都市가스事業法(이하 “法”이라 한다)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中 배관 또는 정압기의 設置
2. 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가스使

用施設中 既存의 單獨住宅·共同住宅 또는 新築하는 單獨住宅에 사용되는 가스 使用施設의 設置

3. 基金에 運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第4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서울特別市長(이하 “市長”이라 한다)이 都市가스事業基金計座를 별도 設置하여 運用·管理한다.

②基金出納命令官은 擔當課長으로 하고, 基金出納員은 擔當係長으로 한다.

③地方財政法の 會計關係 公務員의 責任中 經理官과 징수관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에게, 支出員과 出納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④市長이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基金을 金融機關에 委託하여 管理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第5條(融資對象 및 融資節次 등) ①基金의 融資對象은 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都市가스事業者 및 需要者로서 規則을 정하는 適合한 者 이어야 한다.

②融資節次, 融資限度額 및 融資條件 등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第6條(委託事務에 대한 監督等) 市長은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管理를 金融機關에 委託한 경우 金融機關에 대하여 委託事務에 관한 필요한 資料를 提出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事項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7條(融資資金의 使用等) ①市長은 融資資金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에 適合하게 使用되었는지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基金을 融資받은 一般都市가스事業者 및 需要者에 대하여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②市長은 基金을 融資받은 一般都市가스事業者 및 需要者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에 반하여 基金을 使用한다고 認定되는 경우 貸出의 解止 또는 回收를 하거

나 遡及하여 規則이 정하는 金利를 適用할 수 있다.

第8條(施行規則) 이 條例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부 칙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委員長 白昌鉉 尊敬하는 委員 여러분! 그리고 産業經濟局長님을 비롯한 參席하신 公務員! 모두 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産業經濟局長님과 關係公務員께서는 退場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感謝합니다.

5. 199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6時 09分)

○委員長 白昌鉉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8條에 의거 1991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議事日程 第5項으로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專門委員이 內容을 要約해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成泰辰 專門委員 成泰辰입니다.

1991年度 서울特別市議會 生活環境委員會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내지 第19條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 調査에 關한 條例의 規定에 의해 生活環境委員會가 實施한 行政事務監査結果를 다음과 같이 報告드립니다.

첫째, 監査의 目的을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내지 第19條 서울特別市 行政事務監査및 調査에 關한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生活環境委員會 所管의 市政 全般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함으로써 市行政運營의 實態를 精確히 파악하고 91年度決算 및 92年度 豫算案 審査를 위한 資料 및 情報를 獲得하여 效率的인 行政統制와 議政活動으로 市民福利增進을 도모함과 동시에 立法

活動에 반영코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監査期間은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 調査에 關한 條例의 規定에 의해 12月 3일부터 12月 7일까지 5日間에 걸쳐 生活環境委員會 所管의 市政全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監査實施 對象機關은 環境綠地局과 그 傘下 行政機關인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 綠地事業所, 서울市公園管理事務所인 보라매公園管理事務所와 南山公園管理事務所입니다. 그리고 産業經濟局과 그 傘下 行政機關인 農村指導所와 工業試驗所입니다. 그리고 市民生活局과 그 傘下 行政機關인 體育施設管理事業所와 蘭芝島쓰레기綜合處理事業所 및 衛生處理場입니다.

넷째, 監査實施 經過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 行政事務監査는 生活環境委員會 人員 全원이 감사반을 編成하여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監査場所는 生活環境委員會 會議室이었습니다. 그리고 監査方法은 監査對象 機關에 대한 業務報告現況聽取, 書類提出要求, 主要政策에 대한 質疑를 통한 監査를 實施하였습니다.

다섯째,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에 대해 報告드리겠습니다. 主要監査實施 內容 중 共通事項을 살펴보면 90年度 決算事項, 90年度에서 91年度 豫算執行關聯事項, 그 다음에 90年度에서 91年度 主要業務計劃 및 推進事項, 다음 92年度豫算案 審査에 必要事項, 90年度 國政監査 指摘事項關聯 措置事項, 監査院監査 및 自體 監査結果에 關한 事項, 1991年度 각종 認·許可 및 民願處理 總括現況, 그 다음에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각종 民願現況 및 요지와 處理內譯, 그리고 委員會 傘下 行政機關의 運營管理事項입니다. 아울러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과 建議事項에 대해서는 配付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內容中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은 行政事務監査및 調査에 關한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가